평창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112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우리군이 1972년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일일 16,000톤의 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있고, 2009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72%이나, 유수율은 전국평균 82.6%에 비해 63.5%로 저조한 편으로 관로시설 개량, 수도시설 현대화 등 상수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 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상수도 통합운영을 전제로 하는 시군에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을 지원(국비50%)하여 시설개선과 목표유수율을 2016년까지 85%로 상향시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 우리군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운영(4개시군 : 태백시, 평창,영원,정선)에 참여함으로서 상수도시설 현대화, 서비스 질 개선, 노후관교체, 수질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우리군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 평창군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기업위탁 상수도 시설현황 및 주요사무

○ 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간 : 20년(2012~2031년) [수도법시행령 35조 복합위탁]

○ 총 사업비 : 1,159억원(20년간)

- 시설 대가 : 353억원(시설물 개선, 노후관 교체 등)

- 운영 대가 : 806억원(인건비, 운영경비, 투자보수 등)

○ 위탁대가 : 운영개시일로부터 매월 지급

○ 주요사무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 주요시설 : 28,200㎥/일의 공급시설

- 취수장 : 6개소(진부, 평창, 미탄, 대관령, 봉평, 대화) 34,100㎥/일

- 정수장 : 6개소(진부, 평창, 미탄, 대관령, 봉평, 대화) 28,200㎥/일

- 가압장 : 30개소

- 관 로 : 475km(도수 11, 송수 26, 배수 272, 급수 166km)

- 배수지 : 15개소

나.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결과

○ 용 역 명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 용역기간 : 2011. 7.6 - 2011. 10. 3

○ 용 역 비 : 20,200천원

○ 용역회사 : (주)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 용역결과 : 위탁(시설 및 운영)대가 조정, 인력체계 조정
정수장시설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기준제시
목표유수율 제시 등

※ 조정결과 내역 : 붙임 1

2. 참고사항

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공람공고

- 공고기간 : 2011. 11. 2 - 11. 22
- 공고방법 : 중앙지 1회, 지방지(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1회
- 의견제출 : 의견없음

○ 주민설명회 개최

- 북부(봉평,용평,진부,대관령면)지역
  · 일시 및 장소 : 2011. 11. 8 14:00 진부면사무소
- 남부(평창,미탄,방림,대화면)지역
  · 일시 및 장소 : 2011. 11. 8 14:00 평창읍사무소
- 제출의견 : 지역주민 10명 17건 의견제출
  (통합운영센터 설치위치 , 마을상수도 보급대책, 위탁운영시 고용전환관계 등 다수)

나. 관계법령

○ 「수도법」 제23조, 「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40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다.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붙임 1.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 조정내역 1부.
2.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요약)

(붙임 1)

평창군 사업계획서 주요 변경 사항

1. 주요내용

비목별		주요변경 사항	
		당초(3.17)	변경(8.26)
위탁기간		'11～'30년	'12～'31년
시설투자 재원		국비, 녹색펀드	국비, 지방비
시설비용	1. 수도시설개량(단기)	-	·명칭변경, 조사설계비 반영
	2. 수도시설개량(중장기)	-	·항목신설 - 대수선비 : 운영비→시설비 ·구조물 대수선비 미반영 ·대관령정수장 대수선비 미반영 ·기전설비 대수선비 1차 대비 30%반영
	3.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반영	·미반영 (기협약 체결로 시행중)
	4. LSC운영시스템 구축	-	·평창·대화정수장 LSC구축비용 조정
	5. TSC센터/시스템 구축*		·시스템 조사설계비 반영 ·스마트폰 구입비 미반영
	6. 시설부대비	-	·미반영 (펀드 미사용 사유)
	7. 국고보조금	-	-
운영비용	1. 인건비	'10년 인건비 (1단계: 22명, 2단계: 12명)	·'11년 인건비 (1단계 :21명, 2단계: 20명)
	2. 동력비	-	·기존펌프장 비용 미반영 ·신설펌프장 비용 추가반영(3개소) ·일부조정 (생산량 변경사유)
	3. 약품비	-	·일부조정 (생산량 변경사유)
	4. 수선유지비	-	·항목이동 및 비용조정 - 대수선비 : 운영비→시설비 ·평창통합정수장 시기조정 '16년이후→'13년 이후 ·평창·대화정수장 폐쇄시기 조정 ~'15년→~'12년
	5. 기타경비	-	·LSC리모델링비 조정 (근무인원수 사유)
	6. TSC운영비	-	·시스템 조사설계비 반영
	7. 운영설비비		·LSC 비품비용 조정 (근무인원수 조정사유)
	8. 일반관리비	-	·일부조정 (항목조정 사유)

2. 투자계획

1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비목별		당초	변경	비 고
총사업비		162,983	115,955	△47,028
시설비용	소 계	41,954	35,319	△6,635
	1. 수도시설개량(단기)	1,041	1,268	227
	2. 수도시설개량(중장기)	-	31,671	31,671
	3.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19,327	-	△19,327
	4. LSC운영시스템 구축	1,558	1,246	△312
	5. TSC센터/시스템 구축**	1,026	1,134	108
	6. 시설부대비	339	-	△339
	7. 국고보조금	18,663	-	△18,663
운영비용	소 계	121,029	80,636	△40,393
	1. 인건비	19,455	24,085	4,630
	2. 동력비	6,918	9,069	2,151
	3. 약품비	274	280	6
	4. 수선유지비	65,640	18,504	△47,136
	5. 기타경비	11,798	12,353	555
	6. TSC운영비**	10,289	11,232	943
	7. 운영설비비	1,111	1,420	309
	8. 일반관리비***	5,544	3,693	△1,851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협약체결('10.2)에 따라 별도 시행중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 일반관리비=(1+2+3+4+5+6+7)×4.8%

3. 대가산정

1 제시기준

○ **운영대가** :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

제 시 기 준			조 정 사 항*	
구 분		적 용	주 기	내 용
물 가	당초	2010.7.1 기준 불변금액	매1년	물가변동(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대가조정
	변경	2011.1.1 기준 불변금액		
사업수익률, 적정투자보수		미반영	매1년	전년도 추정공급량과 실제공급량 차이시 변동비 항목조정 (환경부 표준위탁계약서)

○ **시설대가** :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

제 시 기 준			조 정 사 항*		
구 분		적 용	주 기		내 용
물 가	당초	2010.7.1 기준 불변금액	당초	1년	물가변동(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대가조정 사업계획과 집행액의 차이점검 후 투자계획 변경 가능, 변경시점에서 대가 정산 (환경부 표준위탁계약서)
	변경	2011.1.1 기준 불변금액	변경		
사업수익률	당초	3.36% (불변기준)	당초	5년	국고채금리 변동에 따른 대가조정
	변경	미반영	변경	-	-
	비고	공단 선투자 없이 국비, 지방비 충당	비고	-	-

* 조정사항 : 실시협약 체결시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사항 결정

2 위탁대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위탁 1년	위탁 2년	위탁 3년	위탁 4년	위탁 5년	위탁 6년	위탁 7년	위탁 8년	위탁 9년	위탁 10년
운영대가 (A)	당초	121,029	3,457	3,383	3,403	3,384	8,222	8,712	4,980	4,969	4,984	5,345
	변경	80,636	3,500	3,510	3,531	3,450	3,621	4,216	4,233	4,222	4,237	4,224
시설대가 (B)	당초	27,669	1,475	1,515	1,551	1,584	1,614	1,576	1,538	1,502	1,466	1,431
	변경	35,319	955	1,840	1,470	525	515	1,325	1,325	1,325	1,843	2,301
위탁대가 (A+B)	당초	148,698	4,932	4,898	4,954	4,968	9,836	10,288	6,518	6,471	6,450	6,776
	변경	115,955	4,455	5,350	5,001	3,975	4,136	5,541	5,558	5,547	6,080	6,525
	비고	△32,743	△477	452	47	△993	△5,700	△4,747	△960	△924	△370	△251

구 분		위탁 11년	위탁 12년	위탁 13년	위탁 14년	위탁 15년	위탁 16년	위탁 17년	위탁 18년	위탁 19년	위탁 20년
운영대가 (A)	당초	6,497	5,898	6,358	5,813	10,591	6,050	6,064	7,177	8,153	7,589
	변경	4,265	4,227	4,263	4,229	4,154	4,142	4,158	4,146	4,161	4,147
시설대가 (B)	당초	1,394	1,357	1,322	1,288	1,254	1,222	1,190	1,160	1,130	1,101
	변경	2,409	2,409	2,402	2,402	2,176	2,111	2,111	2,111	2,111	1,653
위탁대가 (A+B)	당초	7,891	7,255	7,680	7,101	11,845	7,272	7,254	8,337	9,283	8,690
	변경	6,674	6,636	6,665	6,631	6,330	6,253	6,269	6,257	6,272	5,800
	비고	△1,217	△619	△1,015	△470	△5,515	△1,019	△985	△2,080	△3,011	△2,890

4. 타당성검토

1 일반회계보조금 (향후 20년간)

○ 일반회계보조금 추정결과, **54,944백만원** 예상

(단위 : 백만원)

현금유입			현금유출			비고
급수수익	당초	93,470	위탁대가	당초	148,698	
				변경	115,955	
	변경	94,698	자체 운영비*	당초	3,580	
				변경	14,020	
타회계 전입금	당초	126	원정수 구입비	당초	-	
	변경	128		변경	-	
일반회계 보조금	당초	**63,665**	부채 상환비	당초	1,383	
				변경	647	
	변경	**54,944**	기타 사업비**	당초	3,600	
				변경	19,148	
합 계	당초	**157,261**	**합 계**	당초	**157,261**	
	변경	**149,770**		변경	**149,770**	

* 자체운영비 : 1차(3명, '10년 인건비)→2차(5명, '11년 인건비)

** 기타사업비 : 1차(보급확대사업)→2차(보급확대사업, 상수도관망최적관리 사업)

2 타당성 검토

○ [향후 20년 vs 과거 5개년] 일반회계보조금 규모비교

- **과거 5개년 대비 87.8% 수준으로 위탁타당성 확보**

<표 5.1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추정 일반회계 보조금 평균액	당 초	3,183
	변 경	2,747
	비 고	△436
과거 5년 평균 일반회계보조금('05~'09년)		4,987
비 율	당 초	63.8%
	변 경	55.1%
	비 고	△8.7%

별첨 1 시설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평균	위탁 1~5년	위탁 6~10년	위탁 11~15년	위탁 16~20년
합계	당초	41,954	2,098	41,954	-	-	-
	변경	35,319	1,766	5,305	8,120	11,798	10,096
	비고	△6,635	△332	△36,649			
1.수도시설개량 (단기)	당초	1,041	52	1,041	-	-	-
	변경	1,268	63	1,268	-	-	-
	비고	227	11	227	-	-	-
2.수도시설개량 (중장기)	당초	-	-	-	-	-	-
	변경	31,671	1,584	1,657	8,120	11,798	10,096
	비고	31,671	1,584	1,657	8,120	11,798	10,096
3.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지방비)	당초	37,990	1,900	37,990	-	-	-
	변경	-	-	-	-	-	-
	비고	△37,990	△1,900	△37,990	-	-	-
4.LSC운영시스템 구축	당초	1,558	78	1,558	-	-	-
	변경	1,246	62	1,246	-	-	-
	비고	△312	△16	△312			
5.TSC센터/시스템 구축**	당초	1,026	51	1,026	-	-	-
	변경	1,134	57	1,134	-	-	-
	비고	108	6	108	-	-	-
.시설부대비	당초	339	17	339	-	-	-
	변경	-	-	-	-	-	-
	비고	△339	△17	△339	-	-	-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협약체결('10.2)에 따라 별도 시행중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별첨 2 운영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평균	위탁 1~5년	위탁 6~10년	위탁 11~15년	위탁 16~20년
합계	당초	121,029	6,052	21,849	28,990	35,157	35,033
	변경	80,636	4,032	17,612	21,132	21,138	20,754
	비고	△40,393	△2,020	△4,237	△7,858	△14,019	△14,279
1. 인건비	당초	19,455	973	5,685	4,590	4,590	4,590
	변경	24,085	1,204	5,800	6,095	6,095	6,095
	비고	4,630	231	115	1,505	1,505	1,505
2. 동력비	당초	6,918	346	1,539	1,763	1,795	1,821
	변경	9,069	453	2,034	2,317	2,345	2,373
	비고	2,151	107	495	554	550	552
3. 약품비	당초	274	14	65	69	70	70
	변경	280	14	70	70	70	70
	비고	6	-	5	1	-	-
4. 수선 유지비	당초	65,640	3,282	7,619	15,768	20,778	21,475
	변경	18,504	925	3,009	5,165	5,165	5,165
	비고	△47,136	△2,357	△4,610	△10,603	△15,613	△16,310
5. 기타 경비	당초	11,798	590	3,324	2,822	2,839	2,813
	변경	12,353	618	2,952	3,121	3,159	3,121
	비고	555	28	△372	299	320	308
6. TSC 운영비*	당초	10,289	514	2,361	2,365	3,190	2,373
	변경	11,232	562	2,690	3,007	2,946	2,589
	비고	943	48	329	642	△244	216
7. 운영 설비비	당초	1,111	56	255	285	285	286
	변경	1,420	71	250	390	390	390
	비고	309	15	△5	105	105	104
8. 일반 관리비**	당초	5,544	277	1,001	1,328	1,610	1,605
	변경	3,693	185	807	967	968	951
	비고	△1,851	△92	△194	△361	△642	△654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 일반관리비=(1+2+3+4+5+6+7)×4.8%

(별첨2)

평 창 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 업 계 획 서 (요약)

2011. 12

한국환경공단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추진배경 ····· 1
2. 추진경위 ····· 2
3. 사업목적 ····· 2

Ⅱ. 상수도 현황 ····· 3
1. 시설현황 ····· 3
2. 운영현황 ····· 4
3. 경영현황 ····· 5

Ⅲ. 용수수요 ····· 6
1. 급수인구 ····· 6
2. 보 급 율 ····· 6
3. 유 수 율 ····· 6
4. 용수수급 ····· 6

Ⅳ. 사업진단 ····· 7
1. 진단대상 ····· 7
2. 주요내용 ····· 7
3. 진단내용 ····· 8

Ⅴ. 사업계획 ····· 9
1. 사업개요 ····· 9
2. 대상시설 ····· 9
3. 추진목표 ····· 10
4. 주요업무 ····· 10
5. 시행절차 ····· 11
6. 운영계획 ····· 11

Ⅵ. 투자계획 및 위탁대가 ····· 16
1. 사 업 비 ····· 16
2. 투자계획 ····· 17
3. 대가산정 ····· 18
4. 타당성검토 ····· 19

Ⅶ. 사업효과 ····· 20

Ⅷ. 향후일정(안) ····· 2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① 규모의 영세성

○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 이하의 **영세 수도사업자**가 **81%**(133개)를 차지하여 운영 비효율

* 급수인구 최소 50만 이상이어야 경제성 확보 (한국공기업학회, '04)

② 만성적인 적자운영

○ 소규모 시·군일수록 **총괄원가**가 **높으나**, 공공요금인상 억제 정책 등으로 **요금 인상**은 **매우 어려움**

* 최고(장수군) 2,970원/㎥, 최저(성남시) 448원/㎥으로 지역간 원가 5~7배

③ 수도시설 중복투자

○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04.11~'05. 4)』 상수도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가동율 저하** 문제점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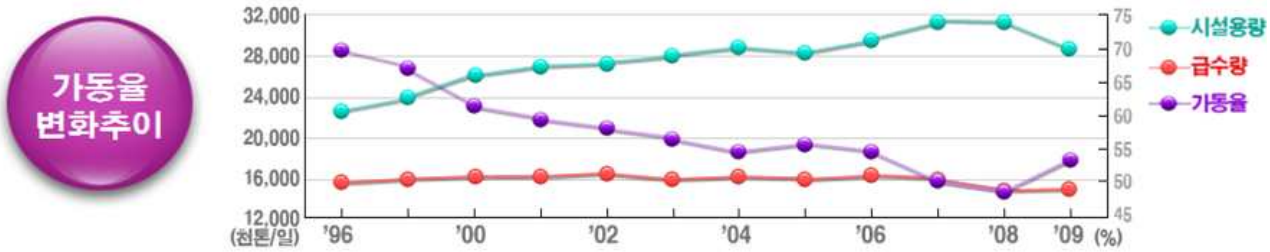

④ 일반회계 지원금 지속 의존

2. 추진경위

□ ‘09. 7 :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MOU체결

□ ‘10. 2 : 강원권 4개 지자체-공단 간 상수관망 위수탁 협약체결

□ ‘10. 5~12 :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 ‘10. 12 :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공기업위탁 실시협약 체결
(강원남부권 4개 시・군, 강원도, 환경부)

□ ‘11. 2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의향서 제출요청
(평창군→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 ‘11. 2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의향서 제출
(한국환경공단→평창군)

□ ‘11. 3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환경공단→평창군)

□ ‘11. 6~8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증용역 실시

□ ‘11. 9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수도관리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11. 11 :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3. 사업목적

□ 통합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중복기능 제거, 중복투자 방지 등 원가절감 및 원격감시 도입 등으로 서비스품질 제고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사업, 시설 현대화 등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효율화 달성

II 상수도현황

1. 시설현황

1 급수현황

○ 총 급수인구는 31.7천명이며, 급수보급률은 72.0%, 유수율 63.5%, 1인1일급수량 414Lpcd, 일평균 13.1천㎥/일의 용수 공급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 인구 (천명)	보급률 (%)	급수량 원단위 (Lpcd)	일평균 급수량 (m^3/일)	유수율 (%)	비 고
강원남부권	176.2	143.5	81.4	618	88,629	42.0	
평창군	44.0	31.7	72.0	414	13,103	63.5	

* 자료 : 2009 상수도통계

2 관로현황

○ 수도관은 총 475km이며, 도수관 11km, 송수관 26km, 배수관 272km, 급수관 166km임

(단위 : km)

구분	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강원남부권	1,665.8	46.9	85.2	861.9	671.8
평창군	474.9 (100%)	10.6 (2.2%)	26.0 (5.5%)	271.9 (57.3%)	166.4 (35.0%)

* 자료 : 평창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현장조사 자료(2010)

2. 운영현황

1 조직현황

('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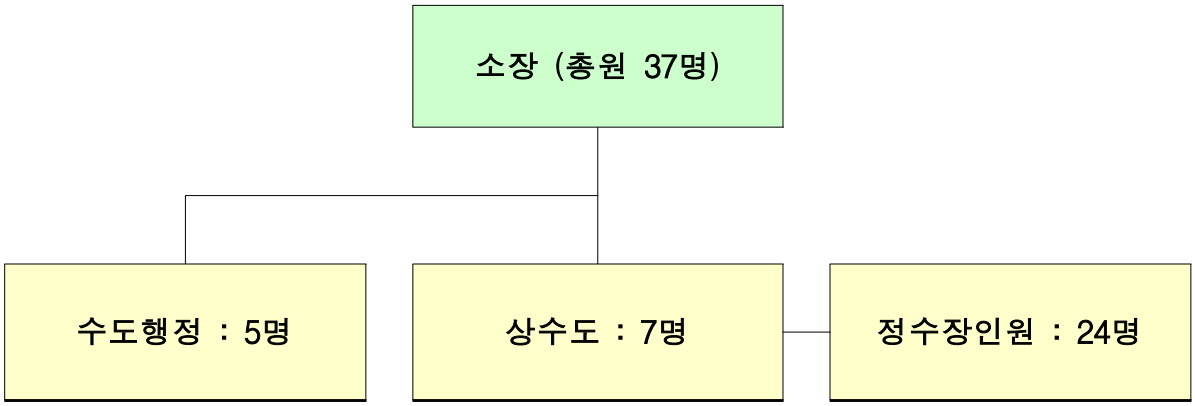

2 운영인원

○ 총 운영인원 : 37명 (정규직 24명, 비정규직 13명)

○ 정규직 인원 중 기능직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비정규직은 청경이 13명으로 가장 많음

('09년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합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
강원남부권	160	83	13	26	44	77	61	12	4
평창군	43	26	1	8	15	13	13	-	-

* 자료 :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2010.12, 환경부)

3. 경영현황

1 손익계산서

○ 평창군은 '09년도 **14억원 영업손실** 발생

(단위: 백만원)

구 분	강원 남부권	평창군
영업수익	16,905	3,711
영업비용	27,771	5,115
영업손익	-10,866	-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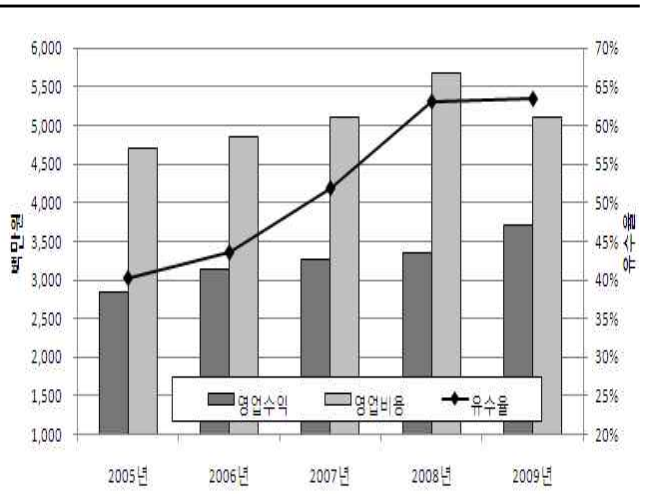

2 요금현황

○ '09년도 수도요금은 1,114원/㎥이며, 총괄원가는 2,393원/㎥, 요금현실화율은 46.6%에 불과

구분	강원 남부권	평창군
총괄원가 (원/㎥)	2,620	2,393
수도요금 (원/㎥)	1,159	1,114
요금현실화율 (%)	44.2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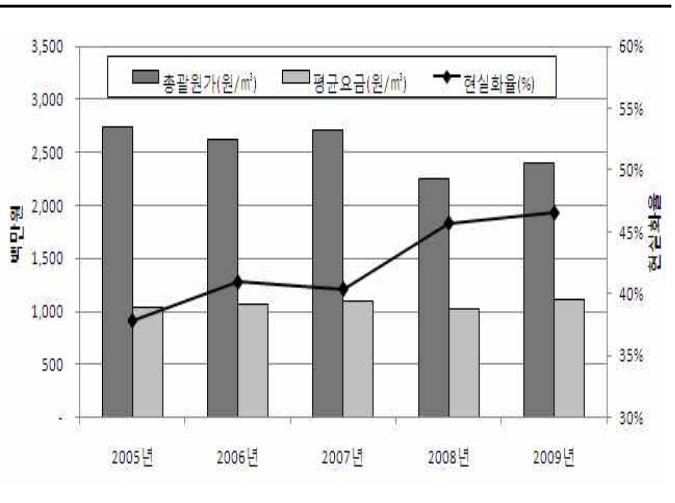

Ⅲ 용수수요

1 급수인구

○ 31.7천명('09년) → 31.0천명('30년)으로 **감소전망**

행정구역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평창군(명)	31,686	32,755	32,086	31,520	31,032	

2 보급률

○ 72.0%('09년) → 75.8%('30년)로 급수보급률 확대

행정구역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평창군(%)	72.0	75.8	75.8	75.8	75.8	

3 유수율

○ 63.5%('09년) → 85.0%('30년)으로 향상

행정구역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평창군(%)	63.5	79.6 (2017년:85.0%)	85.0	85.0	85.0	

4 용수수급

○ 용수수요 : 13천m^3/일 ('15년) → 13천m^3/일('30년), **변동없음**

○ 시설용량 : 28천m^3/일 ('09년) → 32천m^3/일('30년), **시설증대**

(단위 : m^3/일, 일평균)

행정구역	용 수 수 요				시 설 용 량		과부족량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09년	장래	2020년	2030년
평창군	13,086	12,600	12,800	13,030	28,200	31,900	19,300	18,870

* 용수수요량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기타용수, 시설용량 = 지방상수도 + 광역상수도
장래 시설용량은 지자체 확장 및 폐쇄계획을 반영한 용량임

Ⅳ 사업진단

1. 진단대상

1 시설진단

○ 취·정수처리 공정, 수질 및 설비부문

○ 급·배수시설에 대한 관망부문

○ 수도시설 자동화 부문

2 경영진단

○ 최근 5개년 경영성과

2. 주요내용

기초자료 조사	기 진단자료 분석 및 검토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관리 및 운영자료 ▪ 생산량 관리현황 ▪ 수선유지 현황 ▪ 시설개선 내용 ▪ 개발계획 내용 ▪ 요금관련 현황 ▪ 상수도 민원현황 ▪ 상수도 경영현황 ▪ 조직,인원,업무현황 ▪ 기타 참고자료	▪ 관로 Sample 조사 ▪ 유량측정 ▪ 수압측정 ▪ 효율측정 ▪ 시설물 기능조사 ▪ 관리자 Interview ▪ 관망도 보완 ▪ 사고현황 조사	▪ 시설물 평가 ▪ 관로모델링, 모의분석 ▪ 문제점 도출 ▪ 운영 관리 방향 설정 ▪ 시설별 개선방향 설정 ▪ 관망개선 구상 ▪ 고객 및 요금관리

3. 진단내용

1 시설진단

○ 정수 : 공정자동화 설비미비 ⇒ 자동화 및 원격감시 설비구축

○ 관로 : 지형적 영향에 따른 수압관리 필요 ⇒ 블럭시스템 구축

구 분	진단 및 개선계획
정수시설	• 일부 정수장에 펌프설비등의 노후화 및 여과지별로 탁도계가 설치되지 않은곳에 대한 시설개선 필요 • 공정설비 자동화 및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현대화시설 구축
관로시설	• 평창1구역에서 적은 급수사용량으로 관로 유속이 낮아 정체부가 존재하므로 관리대책 필요 • 배수시설의 노후도는 매우 큼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누수관 및 불량관 등의 관망정비

2 경영진단

구 분	진단 및 개선계획
경영진단	• 감가상각비가 증가추세로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시설투자 재조정 필요

(단위 : 백만원)

Index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II.영업비용	4,695	4,852	5,099	5,679	5,114
- 감가상각비	1,148	1,313	1,518	1,732	1,885
III.영업이익(손실)	(1,855)	(1,705)	(1,825)	(2,328)	(1,404)

Ⅴ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년('12～'31년)

□ 사업형태 : 시설소유권→평창군, 운영관리권→공단

□ 대상시설 : 평창군에서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시설 일부

□ 대상업무 :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 위탁대가 : 시설대가＋운영대가

□ 총사업비 : 115,955백만원(시설비용 35,319, 운영비용 80,636)

□ 목표유수율 : 85% 달성('17년이후)

2. 대상시설

□ 시설규모 : 28,200㎥/일의 공급시설(지방 : 28,200㎥/일)

□ 대상시설

・취수장 : 6개소, Q=34,100㎥/일(진부, 평창, 미탄, 대관령, 봉평, 대화)

・정수장 : 6개소, Q=28,200㎥/d(진부, 평창, 미탄, 대관령, 봉평, 대화)

・배수지 : 15개소, V= 16,900㎥

・가압장 : 30개소

・관 로 : 475km(도수 11km, 송수 26km, 배수 272km, 급수 166km)

3. 추진목표

항 목	계 획
유수율제고	· '17～'31년까지 유수율 85% 유지
시설개량	· 노후화된 수도시설 개·보수 ·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계량기 교체 등
관로 교체 및 신설	· 노후관로 개량 · 급배수관로 및 부속설비 정비관리
시스템	· 통합운영시스템, 관망관리시스템, 블록시스템 구축
고객만족도 및 기타	· 고객만족도 향상,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철저

4. 주요업무

구 분	주요내용
시 설 개 량	· 년차별 노후시설 개대체 및 이력관리 ☞ 관로개량, 밸브류 개량 · 관망정비 및 불량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 ☞ 유수율 : '17년 이후 85% 유지 ☞ Block system구축, 계량기 교체 · 개별사업장 원격운전과 운영관리 효율화 시스템 구축 ☞ MIS, SCADA 시스템 등
시 설 운 영	· **운영관리** ⇨ IT기반 정보수집, D/B화 및 원격통합운영 · **관망관리** ⇨ 예방 점검정비, 누수탐사 및 실시간 관망감시 · **수질관리** ⇨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 **시설간 연계/통합운영**
고 객 관 리	· **지자체** ⇨ 요금정책 결정, 징수, 체납관리, 수탁대가 지급 등 · **공 단** ⇨ 요금검침 고지, 원가 및 생산량 분석
기 타	· **지자체** ⇨ 관련 인허가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등 · **공 단** ⇨ 급수시설 설치관리, 민원관리, 콜센터 운영 등
신 규 시 설	·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 등 · **공 단** ⇨ 조사/설계지원, 상호 협의 후 수탁 운영관리

5.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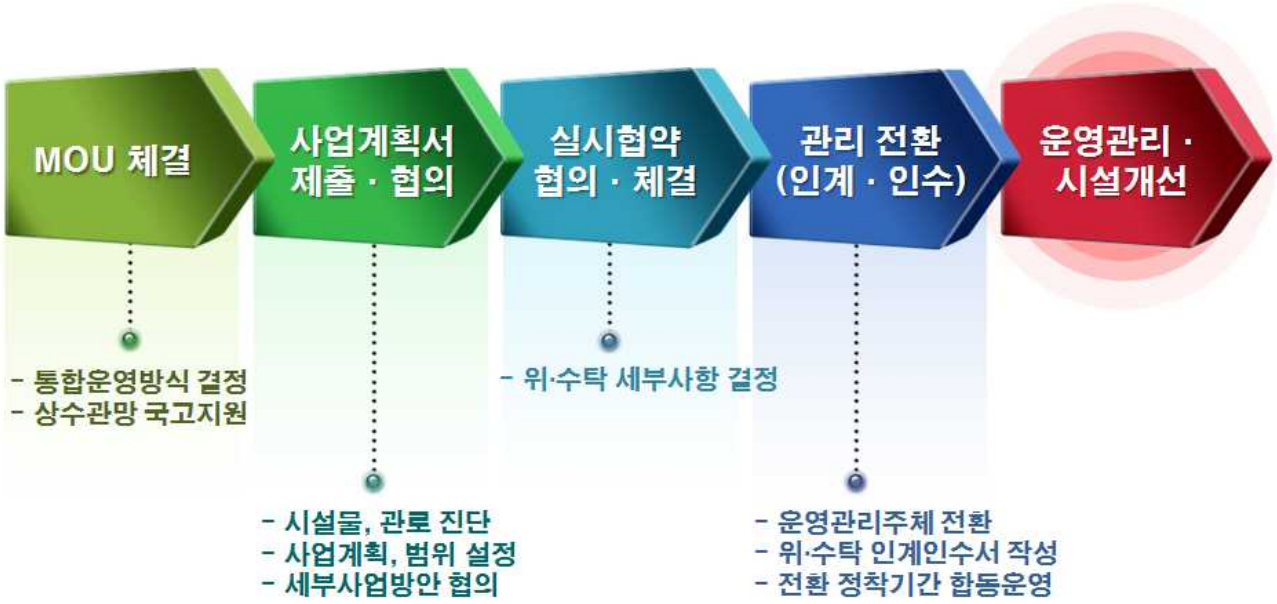

6. 운영계획

1 통합관리 방향

○ 공통업무(시설개선 및 유수율제고 계획, 운전근무 등)을 통합서비스센터(TSC)에서 수행하여 원가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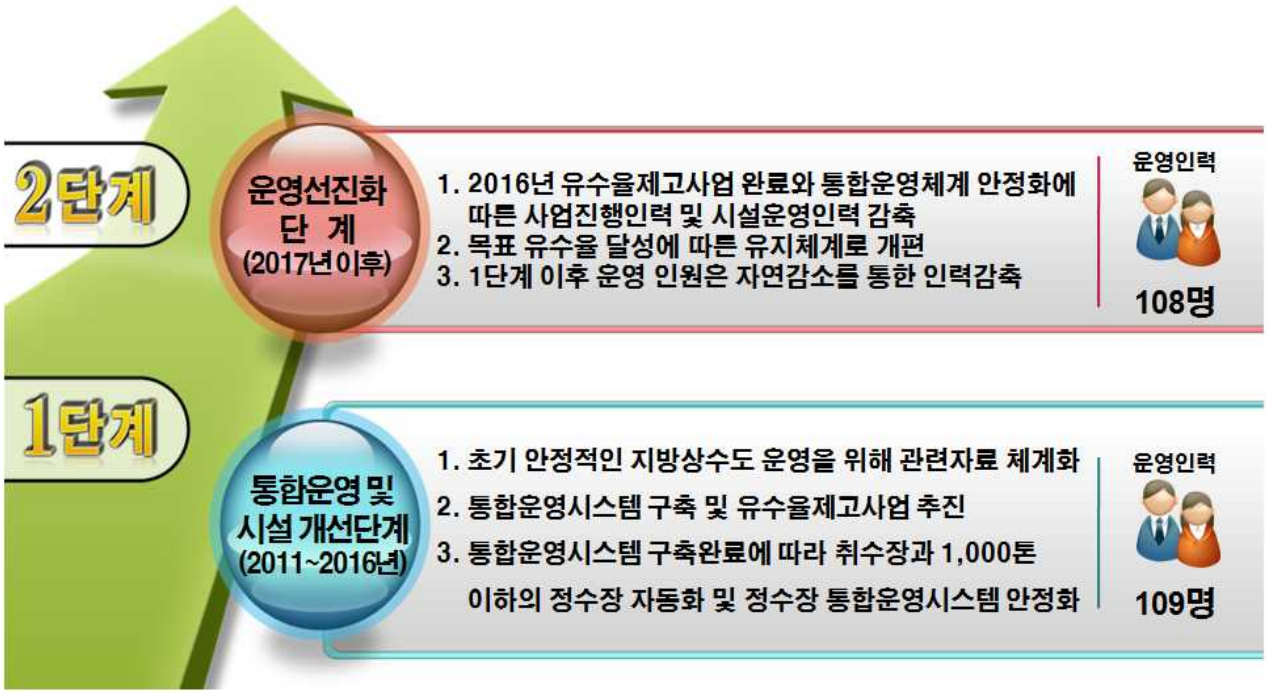

2 고용대책

- ☐ 상수도 업무종사 직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고용전환 신청
- ☐ 지자체 고용전환 인원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해야하는 공단의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다. 단, 당초 계획대비 정원이 초과될 경우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재협상한다.
- ☐ 고용전환 직원은 인사상 기존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평창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관내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 또는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동일하게 전보 가능
- ☐ 직무배치는 기존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감안하며, 필요시에는 고용전환 후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원활한 직무 및 조직 적응 유도

3 통합운영센터 비용배분 (안)

○ 통합운영센터 관리비용은 **지자체별 매출 구성비로 배분**

○ 지자체별 비용배분결과, **평창군은 23.44%**를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됨

○ 비용배분 비율에 대한 지자체간 이해조정이 곤란할 경우, 향후 설립될 **“통합관리 추진협의회(가칭)”**에서 **결정 필요**

구 분	총매출액(백만원)	배분비율(%)	비 고
평 창 군	94,698	23.44	
태 백 시	107,708	26.67	
영 월 군	66,787	16.55	
정 선 군	134,787	33.34	
합 계	**403,980**	**100.00**	

4 단계별 인원계획

통합1단계('12~'16년) : 109명 ➡ 통합2단계('17~'31년) : 108명

구 분	기 간	직급별					
		소계	1급	2급	3급	4~6급	기능직
통합1단계	'12~'16	109 (29)	1 (1)	6 (2)	4 (4)	20 (12)	78 (10)
통합2단계	'17~'31	108 (28)	1 (1)	6 (2)	4 (4)	20 (12)	77 (9)

※ ( ) : 통합운영센터 운영인력

5 통합운영센터 (TSC)

○ **1단계 ('12~'16년)** : 통합운영준비 및 운영안정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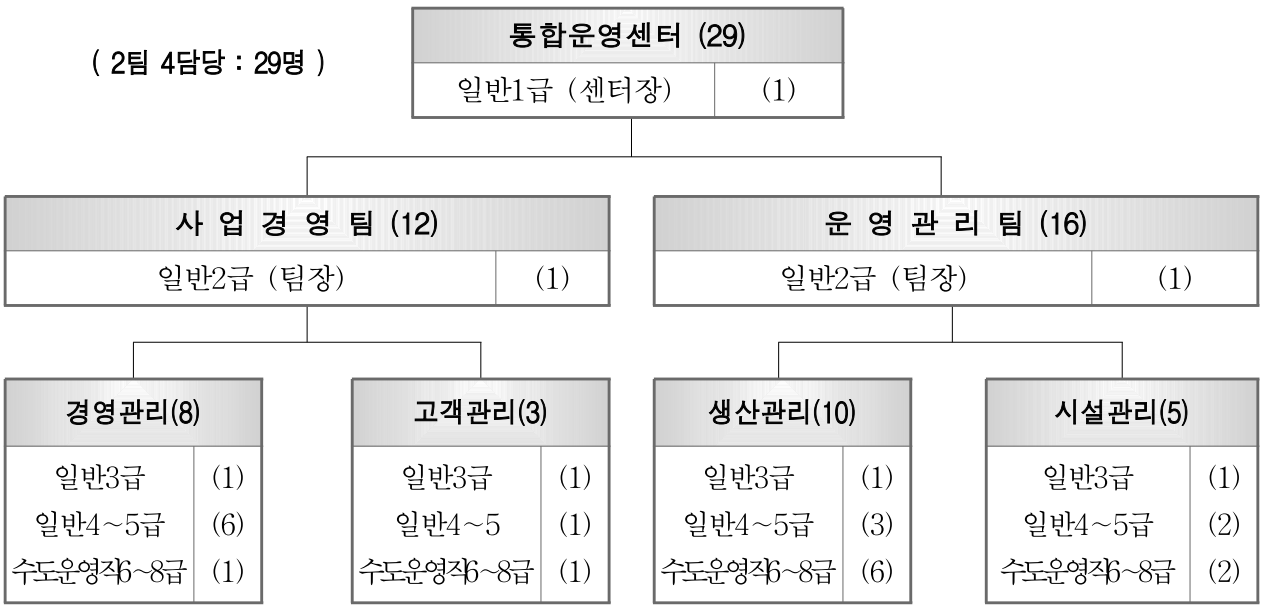

구분	인원	주요업무
통합운영센터	29명	- 통합운영 관리총괄
사업경영팀	12명	- 사업전략, 경영관리, 고객관리 총괄
운영관리팀	16명	- 급수관리 총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설운영관리

○ **2단계 ('17~'31년) :** 운영선진화 단계

(2팀 4담당 :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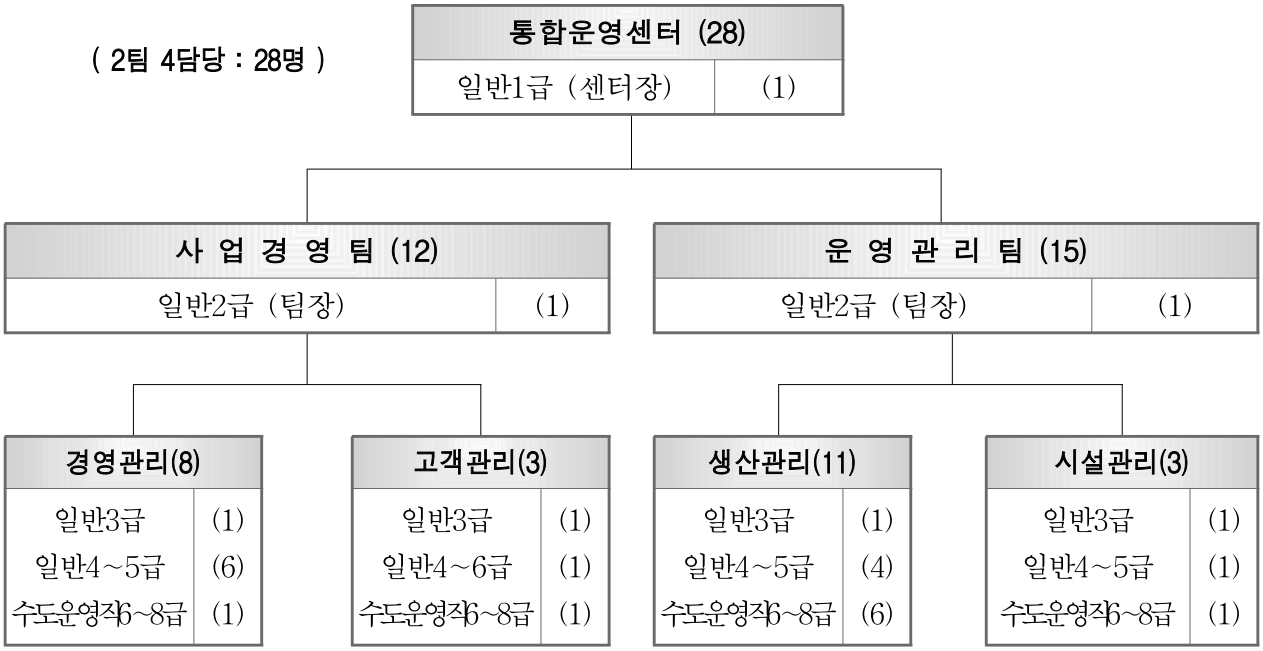

구분	인원	주요업무
통합운영센터	28명	- 통합운영 관리총괄
사업경영팀	12명	- 사업전략, 경영관리, 고객관리 총괄
운영관리팀	15명	- 급수 및 시설운영 총괄(통합운영시스템 운영)

6 지역서비스센터 (LSC)

○ 1단계('12~'16년) : 20명

- 평창군 1개 지역서비스센터 운영
- 정수시설 운영관리 및 검침업무 유지

(총원 :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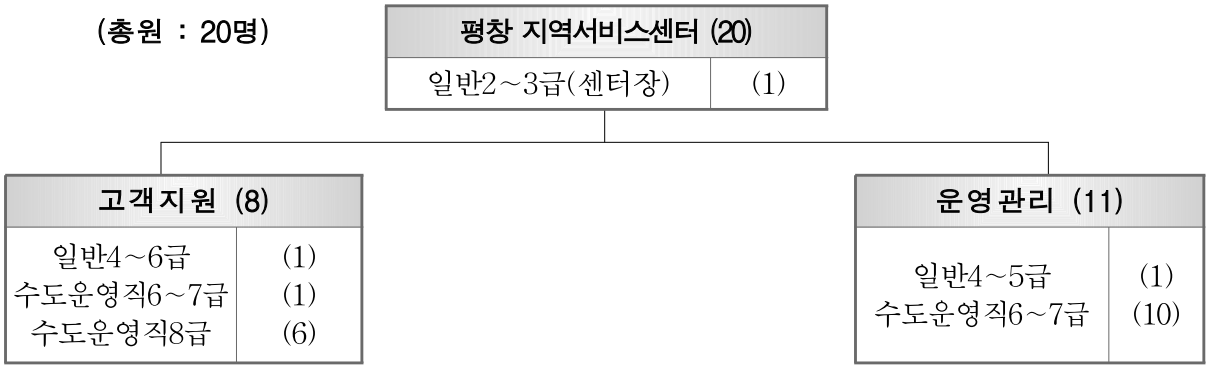

구분	인원	주요업무
지역서비스센터	20명	- 지역서비스센터 운영관리 총괄
고객지원	8명	- 고객, 민원, 요금 및 자산관리, 검침 및 요금고지 등
운영관리	11명	- 수도시설 개선, 정수장 운영, 수도시설 순회점검 및 정비, LSC운영시스템 구축 등

○ 2단계('17~'31년) : 21명

- 평창군 1개 지역서비스센터 운영
- 통합운영시스템 정착으로 유지관리 업무중심으로 개편

(총원 :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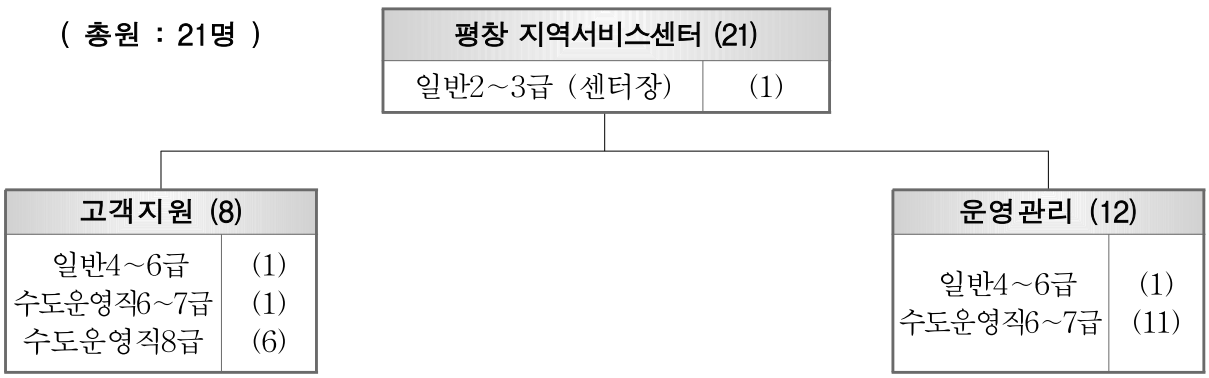

구분	인원	주요업무
지역서비스센터	21명	- 지역서비스센터 운영관리 총괄
고객지원	8명	- 고객, 민원, 요금 및 자산관리, 검침 및 요금고지 등
운영관리	12명	- 수도시설 개선, 정수장 운영, 수도시설 순회점검 및 정비 등

Ⅵ 투자계획 및 위탁대가

1.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115,955	
시설비용	소 계		35,319	
		1. 수도시설개량(단기)	1,268	
		2. 수도시설개량(중장기)	31,671	
		3.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	
		4. LSC운영시스템 구축	1,246	
		5. TSC센터/시스템 구축**	1,134	
		6. 시설부대비	-	
		7. 국고보조금	-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운영비용	소 계		80,636	
		1. 인건비	24,085	
		2. 동력비	9,069	
		3. 약품비	280	
		4. 수선유지비	18,504	
		5. 기타경비	12,353	
		6. TSC운영비**	11,232	
		7. 운영설비비	1,420	
		8. 일반관리비***	3,693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협약체결('10.2)에 따라 별도 시행중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 일반관리비=(1+2+3+4+5+6+7)×4.8%

2. 투자계획

1 시설비용

○ 20년동안 **35,319백만원** 시설비용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평균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합계	**35,319**	**1,766**	**955**	**515**	**2,301**	**2,176**	**1,653**
1. 수도시설개량(단기)	1,268	63	435	-	-	-	-
2. 수도시설개량(중장기)	31,671	1,584	282	515	2,301	2,176	1,653
3.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	-	-	-	-	-	-
4. LSC운영시스템 구축	1,246	62	125	-	-	-	-
5. TSC센터/시스템 구축**	1,134	57	112	-	-	-	-
6. 시설부대비	-	-	-	-	-	-	-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협약체결('10.2)에 따라 별도 시행중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2 운영비용

○ 20년동안 **80,636백만원** 운영비용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평균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합 계	**80,636**	**4,032**	**3,500**	**3,621**	**4,224**	**4,154**	**4,147**
1. 인건비	24,085	1,204	1,160	1,160	1,219	1,219	1,219
2. 동력비	9,069	453	308	428	466	471	476
3. 약품비	280	14	14	14	14	14	14
4. 수선유지비	18,504	925	620	622	1,033	1,033	1,033
5. 기타경비	12,353	618	642	583	619	632	619
6. TSC운영비*	11,232	562	546	598	602	517	518
7. 운영설비비	1,420	71	50	50	78	78	78
8. 일반관리비**	3,693	185	160	166	193	190	190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 일반관리비=(1+2+3+4+5+6+7)×4.8%

3. 대가산정

1 제시기준

○ **운영대가** :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

제 시 기 준		조 정 사 항*	
구 분	적 용	주 기	내 용
물 가	2011.1.1 기준 불변금액	**매1년**	물가변동(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대가조정
사업수익률, 적정투자보수	**미반영**	**매1년**	전년도 추정공급량과 실제공급량 차이시 변동비 항목조정 (환경부 표준위탁계약서)

○ **시설대가** :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정

제 시 기 준		조 정 사 항*	
구 분	적 용	주 기	내 용
물 가	2011.1.1 기준 불변금액	**매1년**	물가변동(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대가조정
사업수익률 (불변기준)	**미반영**	**매5년**	사업계획과 집행액의 차이점검 후 투자계획 변경 가능, 변경시점에서 대가 정산 (환경부 표준위탁계약서)

* 조정사항 : 실시협약 체결시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사항 결정

2 위탁대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대가	80,636	3,500	3,510	3,531	3,450	3,621	4,216	4,233	4,222	4,237	4,224
시설대가	35,319	955	1,840	1,470	525	515	1,325	1,325	1,325	1,843	2,301
위탁대가	115,955	4,455	5,350	5,001	3,975	4,136	5,541	5,558	5,547	6,080	6,525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운영대가	4,265	4,227	4,263	4,229	4,154	4,142	4,158	4,146	4,161	4,147
시설대가	2,409	2,409	2,402	2,402	2,176	2,111	2,111	2,111	2,111	1,653
위탁대가	6,674	6,636	6,665	6,631	6,330	6,253	6,269	6,257	6,272	5,800

4. 타당성검토

1 일반회계보조금 (향후 20년간)

○ 일반회계보조금 추정결과, **54,944백만원** 예상

(단위 : 백만원)

현금유입		현금유출		비 고
급수수익	94,698	위탁대가	115,955	
		자체운영비	14,020	
타회계전입금	128	원정수구입비	-	
일반회계보조금	**54,944**	부채상환비	647	
		기타사업비	19,148	
합 계	**149,770**	**합 계**	**149,770**	

2 타당성 검토

○ [향후 20년 vs 과거 5개년] 일반회계보조금 규모비교

- **과거 5개년 대비 55.1% 수준으로 위탁타당성 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추정 일반회계보조금 평균액	2,747
과거 5년 평균 일반회계보조금('05~'09년)	4,987
비 율	55.1%

Ⅶ 사업효과

○ 공단 위탁후 과거대비 일반회계보조금 55.1% 수준임

○ 생산원가절감, 서비스만족도제고, 시설현대화 등 유무형 효과

사회적 효과	• 유수율제고를 통한 물부족 지역 해소 • 효과적인 재원조달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투자 유도 계기 마련
생산원가 절감	• 상수도관망 선진화 및 전문화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요금 인상 최소화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역서비스센터 운영 등 상수도 서비스 향상에 따른 지역민원 감소
시설 현대화	• 시설개선비 등의 적기투자 35,319백만원 - 수도시설 개량(단기) 1,268백만원 - 수도시설 개량(중장기) 31,671백만원 - LSC운영시스템구축 1,246백만원 - TSC센터/시스템구축 1,134백만원
운영관리비의 전문성	• 경영, 관망, 공정 및 설비 등 분야별 전문 인력투입으로 운영관리전문성 강화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 • 체계적 누수탐사 및 사고예방으로 단수 등의 주민불편 최소화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 협력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Ⅷ 향후일정 (안)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계획서 제출 (공단→평창군)	○ 개별/통합 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11.3
위탁계획서 검증 (평창군)	○ 사업목표, 달성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위탁대가 산정의 적성성 등 * 타당성검토기관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11.8
위탁심의위원회 (평창군)	○ (위원) 공무원, 전문가 15명 이내 ○ (내용) 목적/범위타당성, 기간/위탁대가,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적정성	‘11.9
주민공람·설명회 (평창군)	○ (공고) 중앙/지방신문 각1회 이상, 20일이상 (설명회) 공람시작 10일 이내	‘11.11
의회동의 (평창군)	○ 위탁여부 최종승인	‘11.12
위탁사실 신고·공고 (평창군)	○ (신고) 30일 이내 환경부장관 (공고) 15일 이내 공보 등에 공고	‘11.12
통합실시협약 체결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12.2
합동근무 및 업무인수인계	○ 설계도서, 보고서, 시설물 인수인계 ○ 운영인력 투입 및 시설운영 관리	‘12.1~3
위탁운영 개시	○ 한국환경공단 통합운영	‘12.4

별첨 1 평창군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평균	2012~2016년	2017~2021년	2022~2026년	2027~2031년
총사업비		115,955	5,798 (20년평균)	22,917	29,252	32,936	30,850
운영비용	소 계	80,636	4,032 (20년평균)	17,612	21,132	21,138	20,754
	1. 인건비	24,085	1,204	5,800	6,095	6,095	6,095
	2. 동력비	9,069	453	2,034	2,317	2,345	2,373
	3. 약품비	280	14	70	70	70	70
	4. 수선유지비	18,504	925	3,009	5,165	5,165	5,165
	5. 기타경비	12,353	618	2,952	3,121	3,159	3,121
	6. TSC운영비*	11,232	562	2,690	3,007	2,946	2,589
	7. 운영설비비	1,420	71	250	390	390	390
	8. 일반관리비**	3,693	185	807	967	968	951
시설비용	소 계	35,319	1,766 (20년평균)	5,305	8,120	11,798	10,096
	1. 수도시설개량(단기)	1,268	63	1,268	-	-	-
	2. 수도시설개량(중장기)	31,671	1,584	1,657	8,120	11,798	10,096
	3. 상수도관망최적화***	-	-	-	-	-	-
	4. LSC운영시스템*	1,246	62	1,246	-	-	-
	5. TSC센터/시스템구축	1,134	57	1,134	-	-	-
	6. 시설부대비	-	-	-	-	-	-

*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별 장래 급수수익 예상액 기준배분(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참조)

** 일반관리비=(1+2+3+4+5+6+7)×4.8%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협약체결('10.2)에 따라 별도 시행중

별첨 2 **평창군 시설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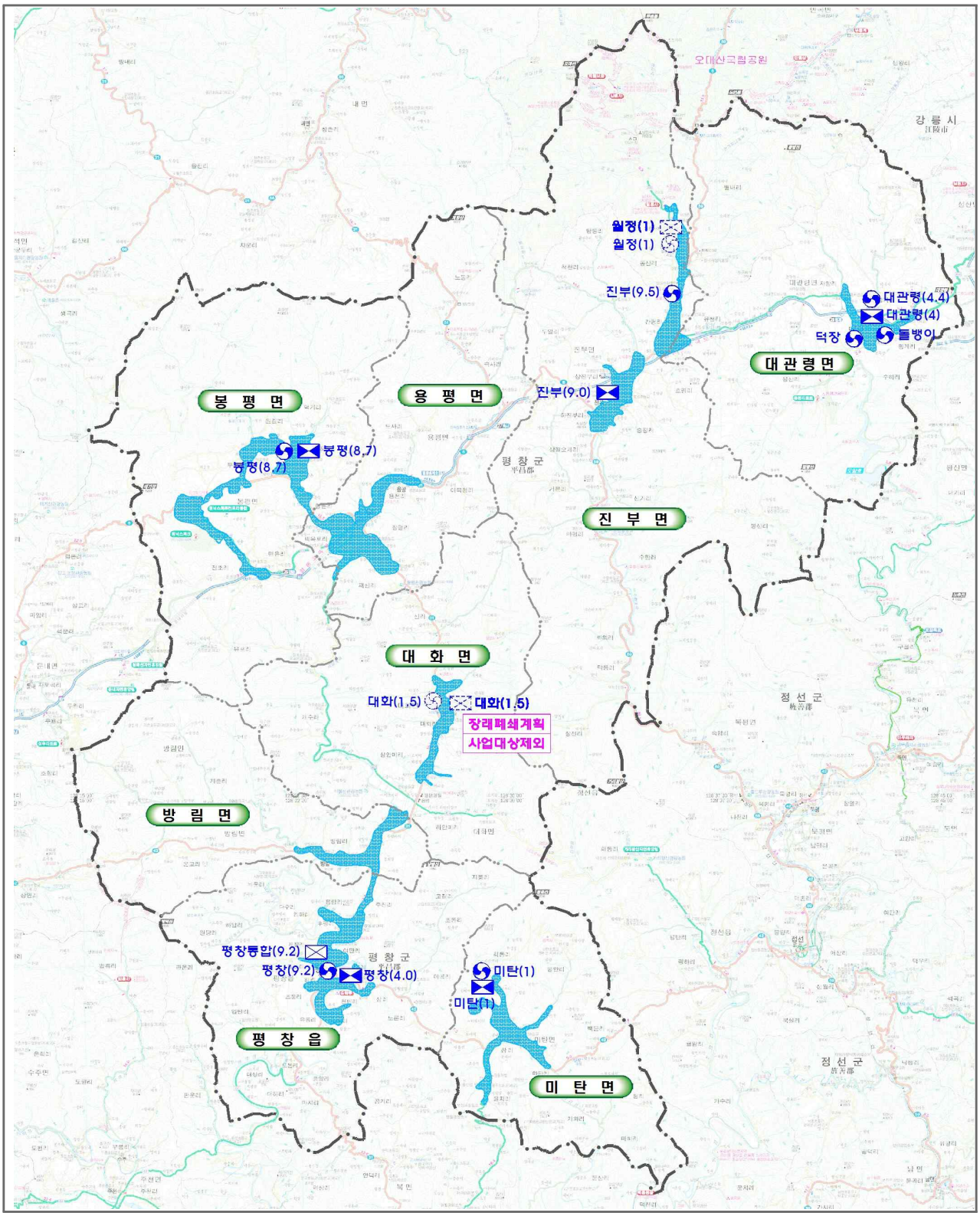

관계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23조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11.14>

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5.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제40조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0.11.26>

③ 삭제 <2010.11.26>

④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11.26]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